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관한 研究

- 1995 年 유엔 協約을 中心으로 -

朴 錫 在*

-
- I. 序 論
 - II. 協約의 制定背景 및 制定經緯
 - III. 協約의 主要內容
 - IV. 協約의 問題點
 - V. 要約 및 結論
-

I. 序 論

오늘날 국제거래에서 보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수단들 중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獨立的 保證書¹⁾(independent guarantee)와 스탠드바이 信用狀²⁾(standby letter of credit)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獨立的 保證書와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獨立的 保證書의 보증인 또는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개설인은 개설의뢰인의 지급 불이행 또는 어떤 다른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일정 금액의 금전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므로 동 증서들은 保證書와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증서들은 保證契約이 아니며 보통은 지급의 불이행과 같은 사실

* 又石大學校 流通商學部 專任講師.

1)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銀行保證書(bank guarantee)는 獨立的 保證書 또는 附從的 保證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銀行保證書”란 용어 대신에 附從的 성격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保證書”라 칭하고, 獨立的 성격을 가지는 것은 “獨立的 保證書”라 한다.

2) 우리 나라에서는 義務의 履行을 保障하는 신용장을 주로 “保證信用狀”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保證이라는 용어는 신용장의 獨立性의 성질과 거리가 먼 附從性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附從性을 排除하고 신용장의 獨立性의 성질을 강조하기 위하여 원어 그대로 “스탠드바이 信用狀”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서류의 제시를 조건으로 하므로 基本去來와 獨立的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증서들의 보증서에 대비한 주요한 장점은 동 증서들 하에서 적당한 서류들이 제출된다면 受益者는 신속하고도 확실한 支給保障을 받는다는 것이다. 반면 동 증서들의 주요한 위험은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의 不當한 또는 詐欺的인 支給請求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 증서들은 1970년대 이후 각종의 국제거래에서 계약의무의 이행 및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증서들을 규율하는 통일적인 準據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기존의 규칙이나 법들은 동 증서를 규율하는 데 미비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 이러한 증서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準據法의 결여로 인한 많은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 이용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지배하는 법에 있어서의 주요한 발전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1995년 회기 중에 발생하였다. 즉, 1995년 12월 11일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을 채택하고 서명 및 추인을 위하여 개방하였다. 6년의 노력을 마무리하면서 동 협약은 영국법에 근거를 둔 獨立的 保證書와 미국법에 근거를 둔 스탠드바이 信用狀간의 법 및 실무에서의 차이를 보충해 준다. 確約에 대한 準據法의 국제적인 통일의 이점은 명백하다. 그러한 노력은 국제환경에서 양 증서의 이용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실정법을 공식화하여 온 분야에서의 國內法에 대한 모델을 제공해 줄 것이다.

동 협약은 개설인, 개설의뢰인 또는 수익자와 같은 당사자들 중 어느 두 당사자의 영업지가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國際的 確約에 관계가 있으며, 개설인의 영업지가 締約國 내에 있거나 또는 만일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 협약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締約國의 법률이 그 確約을 지배할 경우에 적용된다. 동 협약은 1995년 12월 11일에 동 협약의 채택 및 서명을 위하여 국제사회에 개방되었으며, 동 협약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동 협약에 대한 유엔 총회의 채택 후 2년 이내에 5개의 서명국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는 아직 발효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발효할 것으로 예측되는 협약에 관하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자료 및 국내외 학자들의 文獻

研究를 통하여 동 협약의 制定背景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學界에는 이에 관한 앞으로의 研究의 活性化를 또한 實務界에는 동 협약의 豫測可能性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예방과 분쟁발생시의 대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協約의 制定背景 및 制定經緯

유엔에서는 지난 1995년 12월 11일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관한 유엔協約”을 공포하였다. 동 협약은 제 7장 제 29조³⁾로 구성되어 있으며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총괄하는 最初의 國際的인 統一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동 협약이 제정된 배경과 제정경위에 대하여 고찰한다.

1. 協約의 制定背景

동 협약의 제정배경으로는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이 국제거래에서 이용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준거규칙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양 증서의 국제거래에서의 이용증대에 대하여 고찰한다.

(1) 스탠드바이 信用狀 및 獨立的 保證書의 利用 增大

스탠드바이 信用狀 및 獨立的 保證書는 현재 국제거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제거래에서 履行保證書보다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개설의뢰인 측에서의 이점은 엄격일치성의 원칙이 명확히 스탠드바이 信用狀에는 적용될 것이지만, 반면 동 원칙이 履行保證書에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의심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다.⁴⁾ 즉, 엄격일치성의 원칙이 스탠드바이

3) 본 協約은 제 1장 適用的 範圍(제 1조~제 4조), 제 2장 解釋(제 5조~제 6조), 제 3장 確約의 形式 및 內容(제 7조~제 12조), 제 4장 權利, 義務 및 抗辯(제 13조~제 19조), 제 5장 暫定的 法院措置(제 20조), 제 6장 國際私法(제 21조), 제 7장 最終條項(제 23조~제 29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4) *Siporex Trade SA v. Banque Indosuez* [1986], 1 Lloyd's Rep. 146 at 159, and

信用狀에는 명확히 적용가능하지만 履行保證書에는 동 원칙의 적용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반면 개설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은 아마도 제3자들이 신용장에 관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신용장이 그 조건에 있어서 단지 1인의 지정된 수익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그 조건 하에서 지급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연루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履行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현대의 통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⁵⁾ 여기에서는 양 증서의 출현배경과 그 이용 증가에 대하여 고찰한다. 먼저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대하여 살펴보자.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美國에서 생성되었고 현재 동 信用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국가도 미국이다. 먼저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活用背景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은행의 수권된 활동들을 열거하고 있는 聯邦免許銀行法(National Bank Act 1864)을 고려하여 銀行이 他人의 債務를 保證할 權限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⁶⁾ 聯邦免許銀行法에는 은행의 保證行爲에 대한 禁止規定이 없었지만, 1899년 *Bowen v. Needles National Bank* 사건⁷⁾에서 은행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는 것은 은행의 權限外의 行爲(*ultra vires acts*)로서 이는 無效라고 판결되었기 때문에 은행의 保證行爲에 대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⁸⁾ 즉, 保證行爲는 保險會社 및 保證會社의 獨占의인 領域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⁹⁾

그 후 미국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國際入札과 國際契約에 관하여 保證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보증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은행의 보증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前述한 바와 같이 美國의 聯邦免許銀行(National Bank)은 權限外의 行爲로서 保證書의 발행이 금지되었지만, 미국 내의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60년대 이후의 국제거래의 확대에 따라 미국의

pp. 405~6에서 Hirst J.의 논평 참조.

5) G. Andrews and R. Millett, *Law of Guarantees*, Longman, 1992, pp. 429~431.

6) R.I.V.F.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2nd revise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 4.

7) 94 F. 925(9th Cir. 1899).

8) R.A. Lord, "The No-Guaranty Rule and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Controversy", *Banking Law Journal*, Vol. 96, 1979, p. 52.

9) R.I.V.F. Bertrams, *op. cit.*, p. 4.

은행업계는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은행과의 경쟁상 은행의 業務領域인 신용장을 활용하여 은행의 營業能力의 범위내에서 信用狀에 保證의 성격을 부가한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고안하였다.¹⁰⁾ 즉, 貨換信用狀의 기능을 활용하여 신용장 금액을 한도로 主債務者의 계약불이행을 입증하는 不履行陳述書 내지 不履行證明書와 相換으로 채권자에게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는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형식¹¹⁾을 고안해 낸 것이다.¹²⁾

한편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문헌에 의하면 100여년 전에 영국과 미국 및 유럽의 무역에서 사용되어 왔으며,¹³⁾ 현재와 같이 각종 거래에서 계약의무의 이행 및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폭넓게 활용된 시기는 1960년대 이후이다.¹⁴⁾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국제거래에서 특히 1970년대 중반에 성행하게 되었다.¹⁵⁾ 왜냐하면 당시 중동 産油國들의 소득증대는 그들이 서구의 회사들과 下部構造(도로, 공항, 항구시설의 개량공사), 公共土木工事(주택, 병원, 통신망, 발전소), 産業 및 農業 프로젝트, 國防과 같은 大規模 프로젝트에 관한 주요한 契約을 締結하는 것을 가능케 했으며, 이 계약에서 스탠드바이 信用狀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賣買契約, 貨貸借契約, 건설계약, 대부, 채권 발행 또는 어떤 다른 금융상의 약속과 관련된 支給請求에 대한 擔保로서 이용될 수 있다.¹⁶⁾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사용증가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發行額이 貨換信用狀의 發行額을 압도하였다. 미국의 300대 商業銀行의 1990년 1/4 분기의 支給請求報告書에 기초하면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발행 금액은 약 1,500억 美 달러에 달한 반면, 貨換信用狀의 발행 금액은 약 300억 美 달러에 불과하였다.¹⁷⁾ 보다 최근의 자료에 의

10) 小峯 登, 信用狀の知識, 日本經濟新聞社, 1974, pp. 148~149.

11) 따라서 스탠드바이 信用狀이란 貨換信用狀의 형식을 취한 銀行保證書(bank guarantee)라고 말할 수 있다(Hans Van Houtte,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1995, p. 274).

12) 小峯 登, 信用狀統一規則,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77, p. 87.

13) Wolfgang Freiherr von Marschall, "Recent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Standby Letters of Credit, Bank Guarantees and Performance Bonds", *Current Problems of International Trade Financing*, 2nd ed.(edited by E.P. Ellinger), Butterworths, 1990, p. 213.

14) M. Rowe, *Guarantees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Other Securities*, Euro-money Publications, 1987, p. 111.

15) S.J. Pearlman, "Types of Non-Trade Letters of Credit Used in Today's Marketplace", *A Practical Guide to Letters of Credit*(edited by Charles E. Aster and others), Executive Enterprises Publications Co. Inc., New York, 1990, p. 19.

16) R.I.V.F. Bertrams, *op. cit.*, p. 1, 33.

하면 1995년 제 2/4 분기말 미국에서의 스탠드바이 信用狀 이용액은 대략 미화 4,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즉, 미국연방 피보험(Insured)은행들로부터 보고된 수치 및 이러한 수치에 근거를 둔 개산에 의하면 이행(performance)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있어서는 대략 미화 377억 달러 및 금융(financial)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대략 미화 1,158억 달러에 달하였다.¹⁸⁾

각국의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활용상황을 보면, 미국은 지난 30여년 이상 동안 다른 국가의 은행들이 발행가능한 保證書 또는 保證證書 대신에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일반적으로 이용하여 왔다.¹⁹⁾ 영국에서는 미국 受益者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리비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및 스위스 내의 기업들을 受益者로 하여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개설하여 왔다.²⁰⁾ 또한 미국 은행업 관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 및 극동 지역의 국가들, 미국회사를 受益者로 하여 保證書を 발행하는 세계 각국의 은행들에 의하여 스탠드바이 信用狀이 개설되고 있다.²¹⁾

지금까지는 스탠드바이 信用狀이 미국에서 주로 개설되어 왔으나 미국이 國際通商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여타 다른 수단들에 대한 장점으로 인하여 앞으로 그 활용은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²²⁾ 이에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信用狀統一規則에서는 1983년 개정 이후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유엔 총회에서는 독립적인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관한 유엔협약을 1995년 12월 11일에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獨立的 保證書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면, 미국을 제외한 유럽에서도 명칭은 스탠드바이 信用狀이라 칭하지는 않았지만 기능상 그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保證書を 발달시켜 왔다. 保證書の 발행이 權限外의 行爲로서 금

17) D. Pawlowic, "Standby Letters of Credit: Review and Updat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3, 1991, p. 394.

18) "L/C Activity at 300 U.S. Commercial Banks: 2nd Quarter 1995, 12", *LETTER OF CREDIT UPDATE*, Vol. 12, 1996.

19) UNCITRAL,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Guarante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A/CN.9/301), ¶24(이하 UNCITRAL(A/CN.9/301)이라 부른다).

20) C.M. Schmitthoff, *Schmitthoff's Export Trade*, 9th ed., Stevens & Sons, 1990, p. 430.

21) R.I.V.F. Bertrams, *op. cit.*, p. 5.

22) 朴錫在, "스탠드바이(Standby)信用狀의 活用上の 問題點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 請求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6 참조.

지되는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은행들이 보증서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보증서라는 명칭으로 활용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사용된 명칭을 보면 “first-demand guarantees”,²³⁾ “performance guarantees”,²⁴⁾ “simple-demand guarantees” 등이다.²⁵⁾

附從的인 保證과 같은 전통적인 담보수단은 保證人이 主債務者의 모든항변수단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성가시고 불리하다. 또한 은행들은 附從的인 保證人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基本去來 當事者들 사이의 紛爭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사용을 꺼린다. 이러한 장애를 피하기 위하여 實務界는 은행과 같이 신뢰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건실한 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獨立的 保證書를 고안하였다. 현대 유형의 보증서는 貨換信用狀의 많은 특성 중 특히 獨立性 原則과 嚴格一致性 原則을 공유한다. 따라서 만일 보증서의 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은행은 지급하여야 하며 은행은 基本契約에서 나온 항변에 의존할 수 없다.²⁶⁾

한편, 獨立的 保證書는 제 2 차 세계대전 후 외국무역거래에서 점차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²⁷⁾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경제적 발전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建設 및 組立工事, 기타 大役事에 있어서 商去來上의 擔保策으로서 保證方式이 점차 요구되게 되었다. 더욱이 오늘날 國際商去來 및 經濟去來에 있어서는 규모가 큰 사업치고 銀行保證이 첨부되지 아니한 사업은 없다고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형편이다.²⁸⁾ 그러한 獨立的 保證書는 스탠드바이 信用狀과 마찬가지로 국제거래에서 특히 1970 년대 중반에 성행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 기간에 중동 產油國들의 부의 증대는 그들이 서구의 회사들과 下部構造, 公共 土木工事, 産業 및 農業 프로젝트, 國防과 같은 大規模 프로젝트에 관한 주요한 契約을 締結하는 것을 가능케 했으며 이 계약에서 스탠드바이 信用狀과 함

23) *R.D. Harbottle (Mercantile) Ltd. v. National Westminster Bank Ltd.* [1977] 2 All E.R. 862 (Q.B.).

24) *Bolivinter Oil S.A. v. Chase Manhattan Bank*, [1984] 1 Lloyd's Rep. 251 (C.A.); *Edward Owen Eng'g Ltd. v. Barclays Bank Int'l Ltd.*[1978] 1 All E.R. 976 (C.A.).

25) J.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2nd ed., Warren, Gorham & Lamont, 1991, ¶1.05(2)(pp. 1~22).

26) R.I.V.F. Bertrams, *op. cit.*, p. 2.

27) 姜甲善 譯, 貿易決濟論, 法文社, 1977, p. 318.

28) 林泓根 譯, “對外商去來에 있어서 保證信用狀과 이와 類似的 擔保形態”, 樁江 孫珠 瓊博士華甲紀念論文集, 商事法の 現代的課題, 博英社, 1984, pp. 587~588.

개 獨立的 保證書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獨立的 保證書 및 특히 第1請求出給(payable on first demand) 獨立的 保證書에 대한 起源과 初期의 需要가 조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時期라고 말할 수 있다.²⁹⁾

獨立的 保證書는 1970년대 후반 및 1980년대 초기에 買受人 또는 雇傭者(통상 政府)에 의하여 施工業者 또는 供給者에게 先支給이 행해질 것을 요하는 특히 중동에서의 주요한 공급 및 건설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널리 이용되었다.³⁰⁾ 현재 獨立的 保證書의 이용은 國際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그 총액도 또한 극적으로 확대되어 왔다.³¹⁾

(2) 既存規則의 未備

스탠드바이 信用狀과 獨立的 保證書가 국제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 반하여 그 둘을 규율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성문법규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그 유사한 규칙이 있더라도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적인 규율이 미비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였고 UNCITRAL의 협약 제정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³²⁾

가. 契約保證書에 관한 統一規則(1978)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적용가능한 국제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가 1978년에 제정한 “契約保證書에 관한 統一規則”(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325, 1978. 이하 URCG라 부른다)을 들 수 있다. 동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본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의 入札保證書, 履行保證書, 先受金返還保證書에 관한 통일규칙에 규율된다고 기술된

29) R.I.V.F. Bertrams, *op. cit.*, p. 1.

30) A. Loke, “Standby Credits and Performance Bonds: The Lesson of the Iranian Experience”, *Current Problems of International Trade Financing*, 2nd ed.(edited by E.P. Ellinger), Butterworths, 1990, p. 233.

31) 1980년에 네덜란드 은행들에 의하여 발행된 保證書의 총액은 FL(florin : 네덜란드의 골덴 은화) 128억 5천만에 이르렀다. 1990년에 그 금액은 FL 262억 8,100만으로 증대하였다(출처: Comptroller of the Dutch Central Bank, d.d. July 10, 1990). 개별 保證書의 금액이 또한 거액일 수 있다. LG Duisberg, November 27, 1987, WM 1988, p. 1483에서의 保證書는 DM 7,000만에 이르렀으며, *Muduroglu Ltd. v. Ziraat Bankasi* [1986] 1 Q.B. 1225에서의 保證書는 3,600만 달러에 이르렀다(R.I.V.F. Bertrams, *op. cit.*, p. 1).

32) 金善國, “UNCITRAL의 獨立的 保證과 保證信用狀에 관한 統一法制定論議(I)”, 『仲裁』 제235호, 大韓商事仲裁院, 1991. 8, p. 21.

모든 保證書, 金錢債務證書, 補償狀, 保證 또는 그 名稱이나 記述에 關係없이 이와 유사한 確約에 적용된다”³³⁾라고 명시함으로써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동 규칙은 국제적인 保證書, 補償狀, 金錢債務證書 등의 운용에 관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12년간에 걸쳐서 마련되었다. 동 규칙은 은행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入札保證書(tender guarantees), 履行保證書(performance guarantees) 및 先受金返還保證書(repayment guarantees)를 포함한다. 본 규칙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은 保證人の 確約, 最終 請求日, 保證의 滿了 및 返還(expiry and return of guarantee), 契約變更 및 保證, 請求의 提出 및 請求를 뒷받침하기 위한 證據書類, 準據法 및 紛爭의 解決 등이다. 보증인과 주채무자간의 관계 또는 은행들간의 관계는 본 규칙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³⁴⁾

URCG는 특히 濫用(abuse)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보증서 분야의 정당한 관행의 조장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므로 URCG는 第1 請求出給保證書(first demand guarantees)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려되었다.³⁵⁾ 제 9 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독립적인 증거의 요건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만일 보증이 청구서 제출되어야 할 증거서류를 명시하지 않거나 단지 受益者에 의한 請求陳述書만을 명시한다면,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履行保證書 또는 先受金返還保證書의 경우에는 그 청구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法院判決 혹은 仲裁判定, 또는 그 청구 및 지급될 금액에 대한 주채무자의 서면의 승인”

제 9 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 규칙은 “單純請求出給保證書”(simple demand guarantee)를 규율하지 않고 있다. 즉, URCG는 원칙적으로 이른 바 조건부 보증을 규율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보증수단으로 주로 쓰이는 것의 대부분이 이른 바 무조건적 보증의 형태이기 때문에 보증을 규율하는 국제적인 규범으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³⁶⁾ 요컨대 單純請求出

33) “These Rules apply to any guarantee, bond, indemnity, surety or similar undertaking however named or described(“guarantee”), which states that it is subject to the Uniform Rules for Tender, Performance and Repayment Guarantees(“Contract Guarantee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Publication No. 325) …”(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s, Article 1 (1)).

34) UNCITRAL(A/CN.9/301), *op. cit.*, ¶¶62~63.

35) R.I.V.F. Bertrams, *op. cit.*, p. 22.

36) B. Kozolchyk, “The Emerging Law of Standby Letter of Credit and Bank Gua-

給保證書を 규율하지 못하는 것과 본 규칙에 의하여 커버되는 문제들의 제한된 범위때문에 동 규칙은 세계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³⁷⁾ 본 규칙은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즉, 주채무자의 불이행에 대한 수익자의 진술서를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준거법으로 채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³⁸⁾

나. 請求出給保證書에 관한 統一規則(1992)

國際商業會議所의 契約保證書에 관한 統一規則(1978)의 제한적인 성공을 예상하고, 동 회의소는 保證, 補償, 保證證書 및 類似한 確約에 관한 統一規則을 마련할 것을 결의하였다. 國際商業會議所 銀行技術 및 實務委員會(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와 國際商業實務委員會(Commiss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로 구성된 共同作業部(ICC Joint Working Party on 'Contractual Guarantees')가 초안을 마련하는 일을 위임받았다.

공동작업부는 광범위한 논의 후에 작업의 기초로서 런던 및 스코틀랜드 은행가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된 “請求出給保證書 및 金錢債務證書에 관한 實務規定”(Code of Practice for Demand Guarantees and Bonds)을 수용하고 국제상업회의소의 계약보증서에 관한 통일규칙(1978)의 일부 규정들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1988년 1월 7~8일 회의에서 공동작업부는 보증서에 관한 통일규칙의 제1초안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³⁹⁾

“請求出給保證書에 관한 統一規則”(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458, 1992 이하 URDG라 부른다)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특히 어려웠던 점은 보증서 거래의 開設依賴人 편에 속하는 은행, 수출자 및 선진국과 전형적으로 受益者의 편에 속하는 수입자 및 개도국의 利害關係의 상충을 조화시키는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 규칙의 제정작업은 처음에 예정됐던 것보다 상당히 더 장기간을 요하였다. 동 규칙은 결국 1991년 12월 ICC의 執行委員會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며, 1992년 4월에 ICC Publication No. 458로서 공포되었다.⁴⁰⁾

rantees”, *Arizona Law Review*, Vol. 24, 1982, pp. 345~346.

37) UNCITRAL(A/CN.9/301), *op. cit.*, ¶ 67.

38) *ibid.*, ¶ 50.

39) *ibid.*, ¶ 68~69.

본 규칙은 제 1 조⁴¹⁾ 및 제 2 조⁴²⁾에서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URDG의 요구불 보증서의 정의에 포함되며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UCP에 포함되지 않은 규칙을 규정하는 URDG 체제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UCP가 아니라 URDG에 지배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된다(비록 이것은 어떤 관습의 변경을 요구할지라도). 이 점에 있어서 어려움은 은행의 조직 내에서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일상적으로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UCP에 지배되도록 할 전통적인 상업신용장을 다루는 부서에 의하여 취급된다는 것이다.⁴³⁾

URDG의 성공은 국제 비즈니스계가 동 규칙을 어느 정도로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의존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유감스럽게도 URDG는 保證書의 受益者 측을 대표하는 국가, 조직, 개개의 회사 및 특히 은행계가 이 규칙의 채택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수용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가지 이유를 들자면 URDG가 은행들이 사용하는 표준보증서 원문 또는 은행과 수익자들이 포함할 것 또는 배제할 것을 원하는 특별 규정들과 상충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국제 비즈니스계에서 URDG가 광범위

40) R.I.V.F. Bertrams, *op. cit.*, p. 22.

41) "These Rules apply to any demand guarantee and amendment thereto which a Guarantor(as hereinafter described) has been instructed to issue and which states that it is subject to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Publication No. 458) and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stated in the guarantee or any amendment thereto"(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Article 1, ICC Publication No. 458, ICC, 1992).

42)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a demand guarantee(hereinafter referred to as "Guarantee") means any guarantee, bond or other payment undertaking, however named or described, by a bank, insurance company or other body or person(hereinafter called "the Guarantor") given in writing for the payment of money on presentation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e undertaking of a written demand for payment and such other document(s)(for example, a certificate by an architect or engineer, a judgment or an arbitral award) as may be specified in the Guarantee, such undertaking being given
i) at the request or on the instructions and under the liability of a party(hereinafter called "the Principal"); or
ii) at the request or on the instructions and under the liability of a bank, insurance company or any other body or person(hereinafter "the Instructing Party") acting on the instructions of a Principal to another party(hereinafter the "Beneficiary")(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Article 2(a), ICC Publication No. 458, ICC, 1992).

43) R.I.V.F. Bertrams, *op. cit.*, p. 26.

한 수용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URDG의 서론에서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통상적인 請求出給保證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관한 실무가 貨換信用狀에 관한 실무와 유사하고 信用狀統一規則이 본 규칙보다 더 상세하기 때문에 스탠드바이 信用狀에는 본 규칙보다 信用狀統一規則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準據法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⁴⁴⁾

다. 信用狀統一規則(1993)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관한 準據法으로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貨換信用狀에 관한 統一規則 및 慣例』(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이하 UCP 또는 信用狀統一規則이라 부른다)에 대하여 알아본다. 스탠드바이 信用狀이 信用狀統一規則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처음으로 선언된 것은 1977년이다. 즉,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1977년 3월 17일에 스탠드바이 信用狀이 信用狀統一規則 1974년 개정판 총칙 및 정의의 (b)항 하에서 貨換信用狀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은 스탠드바이 信用狀이 信用狀統一規則下의 貨換信用狀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지 또는 保證書로서 고려되어야 하는지의 언명을 은행위원회에게 요구한 인도의 外換去來業者協會(Foreign Exchange Dealers Association of India : FEDAI)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여 이루어졌다.⁴⁵⁾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信用狀統一規則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지만 信用狀統一規則은 1983년 개정(ICC Publication No. 400) 이후 명확하게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⁴⁶⁾

즉, 信用狀統一規則 제 2 조⁴⁷⁾는 전통적인 貨換信用狀뿐만 아니라 스탠드바이

44) R. Goode,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shing S.A., 1992, p. 16.

45) ICC, *Decisions(1975-1979)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1980, p. 11.

46) UNCITRAL(A/CN.9/301), *op. cit.*, ¶51.

47) "For the purpose of these articles, the expressions "Documentary Credit(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hereinafter referred to as "Credit(s)"), mean any arrangement, however named or described, whereby a bank(the "Issuing Bank") acting at the request and on the instructions of a customer(the "Applicant") or on its own behalf,
i. is to make a payment to or to the order of a third party(the "Beneficiary"), or is to accept and pay bills of exchange(Draft(s)) drawn by the Beneficiary, or
ii. authorizes another bank to effect such payment, or to accept and pay such bills of exchange(Draft(s)), or

이 信用狀도 동일한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규칙은 적용가능한 범위까지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포함한 모든 貨換信用狀에 적용된다”라는 제 1 조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 즉, 信用狀統一規則의 어느 조항들이 사실상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적용가능하고 만일 동 조항들이 적용가능하다면 또한 어느 정도까지 적용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規則이나 指針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適用可能性의 문제들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문제가 될 때에는 상당한 정도의 不確實性이 남게 된다.⁴⁸⁾

이와 관련하여 國際商業會議所에서는 “개별 신용장들의 특별한 제조건을 모르고서 어느 조항들이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적용가능하고 또한 어느 조항들이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적용불가능한지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적용은 전적으로 개개의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성질에 의존한다”라고 진술하면서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적용가능한 규정들을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⁹⁾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을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준거법으로 삼는 데에는 불확실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3) 國際統一規則의 缺如

미국에서는 스탠드바이 信用狀과 관련한 法體制 및 實務는 잘 확립되어 있다. 貨換信用狀의 基本原則과 運用方式을 그대로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貨換信用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法律的인,⁵⁰⁾ 運用上的 體制에 지배를 받아 왔다. 그러한 것으로서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동 信用狀의 기초가 된 基本去來와 獨立的인 것으로서 취급되며, 書類附 및 商業上的 約束으로서 취급된다. 그러나 미국 외부에서는 스탠드바이 信用狀이

iii. authorizes another bank to negotiate, against stipulated document(s), provide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re complied with”(UCP Article 2).

48) UNCITRAL(A/CN.9/301), *op. cit.*, ¶53.

49)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ICC Publishing S.A., 1991, Case 168(Revocability of a standby letter of credit), p. 14.

50) 스탠드바이 信用狀이 美國 統一商法典 第 5 篇(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5 Letters of Credit; 이하 U.C.C. §5-라 부른다)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은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출현에 있어서 비교적 이른 시대에 확립되었다. 예를 들면 *O'Grady v. First Union National Bank*, 250 S.E. 2d 587, 599 (N.C. 1978) 사건 참조(J.E. Byrne and H. Burman, *op. cit.*, p. 736).

적절하게 정의되지 못하였다. 전통적인 유럽의 실무계는 종종 스탠드바이 信用狀과 기능상 유사한 獨立的 保證書(때때로 “first demand guarantees”, “bank guarantees”라고 불려진다)를 이용하여 왔다. 이러한 증서는 스탠드바이 信用狀과 동시에 유럽사회에서 출현하였으며 이론상 스탠드바이 信用狀과 동일하지만 동 증서는 履行保證書로만 이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支給, 留止命令(injunction), 期間의 終了(expiry) 등에 관해서 다른 기준에 지배될 수 있다. 게다가 동 증서는 중동 지역의 契約協定에서 더 많이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실무의 다른 차이들이 발생하여 왔다.⁵¹⁾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로서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스탠드바이 信用狀 및 獨立的 保證書에 관한 규칙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開設依頼人 또는 主債務者가 법원에 支給禁止를 요청하는 경우 특히 심각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국가마다 크게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증서의 豫測可能性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그러한 증서의 商業的인 價値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確約에 대한 準據法의 國際的인 統一이 요구되었다. 이와 관련된 準據法의 國際的인 統一의 利點은 명백하다. 즉, 그러한 統一은 국제환경에서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이용확대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각국의 國內法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⁵²⁾

2. 協約의 制定經緯

협약의 제정 결정은 UNCITRAL의 貨換信用狀 및 保證書 양 주제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ICC)와의 오랫동안 걸친 공동작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제상거래법 분야에서 활동중인 다른 조직들의 작업과 조화되고자 하는 의무에 따라 UNCITRAL은 1968년부터 1977년까지 정기적으로 貨換信用狀 및 保證書에 관한 발전을 검토하였다.⁵³⁾ UNCITRAL은 UCP의 1974년 개정에 ICC와 활발하게 공동연구하였고 ICC가 그 개정을 채택한 후에는 동 개정의 이용을

51) *ibid.*, pp. 736~737.

52) *ibid.*, p. 737.

53) 양 주체들은 Report of the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the Work of its First Session, U.N. GAOR, 23rd Sess., Supp. No. 16, ¶48, U.N. Doc. A/7216(1968)에서 작업 프로그램 위에 놓여졌다. 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1977년까지 연보의 각각에 포함되어 있다.

권고하였다.⁵⁴⁾ UCP의 명백한 성공을 고려하여 UNCITRAL은 보증서를 지배하는 일련의 규칙을 제정하도록 ICC를 격려했다. 그러나 ICC가 1978년에 계약보증서에 관한 통일규칙(URCG)을 채택하였을 때 ICC는 UNCITRAL에게 동 규칙의 이용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UNCITRAL도 솔선하여 동 규칙을 권고하지 않았다.⁵⁵⁾

1968년 첫 회기에서 유엔國際商去來法委員會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은 국제적인 支給保證書에 대한 豫備的 研究를 제 2 회기에 제출하였다(A/CN.9/20). 10년 후에 사무국은 1978년 제 11 회기에서 “國際商業會議所와 協力하여 研究될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위원회의 작업 프로그램 내에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A/33/17, ¶¶ 67 (c) (ii) a, 68 및 69)에 뒤이어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관한 예비적 연구(A/CN.9/163)를 제출하였다.⁵⁶⁾

요청받은 연구를 포함한 보고서가 1988년 UNCITRAL에 제출되었을 때 ICC는 1978 URCG에 대한 대체 또는 보완을 의도하였던 獨立的 保證書에 대한 새로운 규칙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獨立的 保證書에 대하여 유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신 ICC 규칙초안은 “그 기능 및 목적에 의하여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전통적인 商業信用狀 또는 貨換信用狀과 상당히 다르며 獨立的 保證書 및 유사한 補償(indemnities)과 같다”⁵⁷⁾고 주장하기 때문에 UNCITRAL 사무국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그러므로 UNCITRAL에 의한 모든 작업은 獨立的 保證書에 관해서는 ICC에서 이미 잘 진행되었던 그 프로젝트를 다시 활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유엔 사무국은 UNCITRAL 작업부의 회기가 동 ICC 규칙의 초안에 대한 고려 및 코멘트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UNCITRAL은 이에

54) Report of the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the Work of its Eighth Session, U.N. GAOR, 30th Sess., Supp. No. 17, ¶ 1, U.N. Doc. A/10017 (1975).

55) ICC Publication No. 325. 비록 그것이 기록에는 없을지라도 URCG가 그 시인을 위하여 UNCITRAL에 제출되지 못한 이유는 URCG가 서류부이건 또는 그 반대이건간에 단순청구보증서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UNCITRAL 사무국은 URCG가 자신이 발전시켰던 국제통상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만일 시인 요청이 행해진다면 UNCITRAL은 시인 요청을 거절할 것이라는 분명한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이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E.E. Bergsten, “A New Regime for International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The UNCITRAL Draft Convention on Guaranty Letters”, *The International Lawyer*, Vol. 27, 1993, pp. 860~861).

56) UNCITRAL(A/CN.9/301), *op. cit.*, ¶ 8.

57) *ibid.*, ¶ 91.

동의하였다. 이것은 위원회가 모든 지역 및 다양한 경제적·법률적 제도의 균형잡힌 대표와 함께 그 초안 규칙의 세계적인 受容性을 평가하도록 허용해 줄 것이다. 초안 ICC 규칙을 고려하는 것에 추가하여 작업부는 UNCITRAL이 그 주제에 관한 통일법을 마련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청받았다. 작업부는 그러한 권고를 하였고 UNCITRAL은 그것을 채택하였다.⁵⁸⁾

유엔의 노력은 따라서 국제법 및 국내법 양자의 조화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내면서 미국 통일상법전 제5편에 포함된 미국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중요한 국제적인 법률적 원문(ICC의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과 동시에 착수되었다.⁵⁹⁾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통일화의 가능성과 바람직함을 결정한 후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1990년 1월 1일에 동 위원회의 國際契約實務에 관한 作業部에게 이 프로젝트를 떠 맡으라고 지시하였다. 이 과정의 한 단계에서 일치가 어렵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미국은 “두 가지 방식”(two-track)의 다국간 조약 즉, 서류의 성질에 따라서 스탠드바이 信用狀 또는 獨立的 保證書에 적용 가능한 별개의 규정들 뿐만 아니라 일부 공통의 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을 제안하여 왔다. 그러나 회원국 및 업저버에 의한 광범한 참가와 함께 6년간의 작업 및 몇몇 제안된 초안 후에 작업부는 스탠드바이 信用狀 및 獨立的 保證書에 관한 최종 초안 협약(Final Draft Convention on Standbys and Independent Guarantees)을 UNCITRAL에 제출하였고 UNCITRAL은 1995년 5월에 일부 변경과 함께 그 초안을 채택하였다. 초안 협약은 그 후 채택을 위하여 유엔 총회에 제출되었다. 유엔총회는 1995년 12월 11일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의 형식으로 단일의 법률적인 표준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그 협약에 대한 유엔 총회의 채택 2년 이내에 5개의 서명국이 요구된다.⁶⁰⁾

58) U.N. Doc. A/CN.9/316, ¶¶ 122~23;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the Work of its Twenty-Second Session, U.N. GAOR, 44th Sess., Supp. No. 17, ¶ 244, U.N. Doc. A/44/17(1989)(E.E. Bergsten, *op. cit.*, pp. 861~862).

59) J.E. Byrne and H. Burman, *op. cit.*, p. 735.

60) B. Wunnicke, D.B. Wunnicke and P.S. Turner, *STANDBY AND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2nd ed., Wiley Law Publications, 1996, pp. 151~152.

Ⅲ. 協約의 主要内容

1. 國際性

본 協約의 主要한 內容으로서 協約의 國際性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동 協約 제 4 조⁶¹⁾는 確約의 國際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確約은 동 確約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만일 다음 당사자들(보증인/발행인, 수익자, 주채무자/발행의뢰인, 지시당사자, 확인업자) 중 어떤 두 당사자의 영업장소가 상이한 국가 내에 있다면 국제적이다.

2. 1 항의 목적상,

(a) 만일 確約이 주어진 당사자에 대한 둘 이상의 영업장소를 기입한다면, 관련 영업장소란 그 確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다.

(b) 만일 確約이 주어진 당사자에 대한 영업장소를 명시하지 않고 그 당사자의 상습적 거주지를 명시한다면, 그 거주지가 確約의 국제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데에 관련된다.

유엔협약의 제정작업부는 協約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들었을 때에 그 協約은 “국내 증서의 포함은 協約의 세계적인 受容性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國際的 證書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⁶²⁾

그러나 최근에는 본 協約이 국내 거래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非國際的인 保證書의 당사자들도 그 보증서가 協約에 지배된

61) “1. An undertaking is international if the place of business, as specified in the undertaking, of any two of the following persons are in different States: guarantor/issuer, beneficiary, principal/applicant, instructing party, confirmer.

2.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 If the undertaking list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for a given person, the relevant place of business is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to the undertaking;

(b) If the undertaking does not specify a place of business for a given person but specifies its habitual residence, that residence is relevant for determining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undertakin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rticle 4, December 11, 1995).

62) U.N. Doc. A/CN.9/316, ¶172.

다고 단지 진술함으로써 保證書에 대한 協約의 적용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⁶³⁾

2. 獨立性

본 협약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協約의 獨立性を 지적할 수 있다. 즉, 동 협약 제3조⁶⁴⁾에서는 確約의 獨立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의 목적상 수익자에 대한 보증인/발행인의 채무가 이하의 내용에 의존하거나 지배되지 않는 확약은 독립적이다.

(a) 모든 기본거래의 존재 혹은 유효성 또는 모든 다른 확약(확인 또는 역보증⁶⁵⁾이 관련되는 스탠드바이 信用狀 또는 獨立的 保證書を 포함하는)에 의존하지 않는 확약 또는

(b) 확약에서 나타나지 않은 모든 제조건 또는 서류의 제시 혹은 보증인/발행인의 영업범위 이내의 다른 그러한 행위 혹은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장래의, 불확실한 행위 혹은 사건에 지배되지 않는 확약.

確約의 獨立性에 관하여 스탠드바이 信用狀 및 獨立的 保證書の 상황에 관

63) U.N. Doc. A/CN.9/372, ¶¶ 68~72.

64)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n undertaking is independent where the guarantor/issuer's obligation to the beneficiary is not:

(a) Dependent upon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any underlying transaction, or upon any other undertaking (including stand-by letters of credit or independent guarantees to which confirmations or counter-guarantees relate); or

(b) Subject to any term or condition not appearing in the undertaking, or to any future, uncertain act or event except presentation of documents or another such act or event within a guarantor/issuer's sphere of operation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rticle 3, December 11, 1995).

65) "역보증"이란 그 지시당사자에 의하여 다른 확약의 보증인/발행인에게 주어지고 그 다른 확약하의 지급이 그 다른 확약을 발행하는 자로부터 청구되었거나 또는 발행하는 자에 의하여 행해졌음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것이 추론될 수 있는 확약의 조건 및 모든 서류의 조건에 따라서 단순청구시 또는 다른 서류들이 첨부된 청구시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확약을 의미한다 (Counter-guarantee means an undertaking given to the guarantor/issuer of another undertaking by its instructing party and providing for payment upon simple demand or upon demand accompanied by other documents,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and any documentary conditions of the undertaking, indicating, or from which it is to be inferred, that payment under that other undertaking has been demanded from, or made by, the person issuing that other undertakin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rticle 6 (c), December 11, 1995).

하여 살펴보면, 먼저 정의에 의하여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조건하에서 개설인의 독립적인 지급약속을 포함한다. 또한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서는 獨立的 保證書이므로 이는 보증서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다. 保證書의 獨立性은 실제적인 문제로서 지급청구가 현실적으로 서류부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은행은 그 다음 서류가 정확히 수익자의 지급청구권을 반영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서류가 … 문면상 보증서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가”를 단지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⁶⁶⁾

또한 협약 제 2 조 1 항⁶⁷⁾에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는 확약은 단순 청구시 또는 지급이 채무의 不履行 때문에 지급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다른 서류들의 제시시 수익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개설인에 의한 독립적인 약속임을 규정함으로써 確約의 獨立性을 강조하고 있다. ICC의 UCP 및 URDG에서는 信用狀과 要求拂 保證書가 각각 基本契約로부터 별개의 거래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동 협약의 규정은 명확하게 確約의 獨立性을 강조하고 있다.⁶⁸⁾

3. 不當한 請求

본 협약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不當한 請求에 관한 규정을 지적할 수 있다. 동 협약 제 19 조⁶⁹⁾에서는 不當한 請求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6) UCP 제 15 조 참조.

67)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rticle 2 1, December 11, 1995 참조.

68) M. Sneddon, *op. cit.*, pp. 145~146.

69) “1. If it is manifest and clear that :

(a) Any document is not genuine or has been falsified ;

(b) No payment is due on the basis asserted in the demand and the supporting documents ; or

(c) Judging by the type and purpose of the undertaking, the demand has no conceivable basis, the guarantor/issuer, acting in good faith, has a right, as against the beneficiary, to withhold payment.

2.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c)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following are types of situations in which a demand has no conceivable basis :

(a) The contingency or risk against which the undertaking was designed to secure the beneficiary has undoubtedly not materialized ;

(b) The underlying obligation of the principal/applicant has been declared invalid by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unless the undertaking indicates that such contingency falls within the risk to be covered by the undertaking ;

(c) The underlying obligation has undoubtedly been fulfill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beneficiary ;

지급의무에 대한 예외

1. 만일 다음의 내용이 분명하고 명백하다면 선의로 행동하는 보증인/발행인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을 보류할 권리를 가진다.

(a) 모든 서류가 부진정하거나 위조되었음,

(b) 청구서 및 지지하는 서류들에서 주장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어떠한 지급도 정당화되지 않음. 또는

(c) 확약의 유형 및 목적에 의하여 판단하건대 그 청구는 아무런 상상할 수 있는 기초도 가지고 있지 않음.

2. 본조항의 1항 (c)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는 청구가 아무런 상상할 수 있는 기초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들의 유형이다.

(a) 확약이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한 우발사고 또는 위험이 의심할 여지없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b) 만일 확약이 그러한 우발사고가 확약에 의하여 커버될 위험에 해당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주채무자/발행의뢰인의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c)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의심할 여지없이 수익자가 만족하도록 수행된 경우

(d)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수행이 분명하게 수익자의 고의적인 비행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

(e) 역보증하의 청구의 경우 역보증의 수익자가 역보증이 관련되는 확약의 보증인/발행인으로서 악의로 지급을 행한 경우.

작업부가 不當한 請求의 내용에 관하여 검토할 때에 동 작업부는 참가자들이 그들 국가의 사법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표준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특히 혼란스러웠다. 예를 들면 “詐欺”(fraud)와 “權利의 濫用”(abuse of right)이라는 용어는 그 용어들이 이미 다양한 법제도에서 잘 발전되었지만 서로 불일치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철회되었다.⁷⁰⁾ 일반적으로 不當한 請求라 간주되는

(d) Fulfilment of the underlying obligation has clearly been prevented by wilful misconduct of the beneficiary ;

(e) In the case of a demand under a counter-guarantee, the beneficiary of the counter-guarantee has made payment in bad faith as guarantor/issuer of the undertaking to which the counter-guarantee relate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rticle 19, December 11, 1995).

70) U.N. Doc. A/CN.9/361, ¶¶ 77, 80. 詐欺의 개념은 종종 형법 개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U.N. Doc. A/CN.9/345, ¶ 40).

유일한 실질적 근거는 서류가 偽造되었다는 것이다.⁷¹⁾

작업부는 스탠드바이 信用狀 및 獨立的 保證書에 관한 관행과 일치하여 개설인은 청구가 부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개설인은 물론 서류가 眞正하고 보증서에서 요구된 서류들과 일치하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들을 심사하여야만 한다. 그 점에 대해서 작업부는 또한 UCP 500 제 13 조에서 이용되는 두 갈래의 접근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설인은 불일치에 관하여 서류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善意와 相當한 注意의 표준을 고수하여야 한다. 사소한 불일치가 서류의 거절로 귀착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설인은 국제적인 보증서 또는 스탠드바이 信用狀 관행의 적용가능한 표준에 대하여 정당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작업부는 또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⁷²⁾

請求가 不當하거나 또는 保證書의 제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 개설인은 지급 또는 지급거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개설인이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선택한 경우 지급은 主債務者의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⁷³⁾

不當한 支給請求에 관하여 작업부는 支給請求에 있어서의 사기 또는 남용이 명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의하여 인지될 수 있는 경우 개설인은 지급을 거절할 의무가 지워질 것이라고 합의하였다.⁷⁴⁾

지급의 거절을 정당화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러한 더 광범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의도하는 바는 코먼로와 마찬가지로 제 17 조⁷⁵⁾는 개설인이 확약의 요건에 일치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단지 만일 개설인이 제 19 조에 따라 “청구를 명백하고 분명하게 부당하게 만드는 사실이 증

71) U.N. Doc. A/CN.9/345, ¶ 82.

72) U.N. Doc. A/CN.9/374, ¶ ¶ 93~95, 99, 107.

73) Eric E. Bergsten, *op. cit.*, p. 873.

74) U.N. Doc. A/CN.9/361, ¶ ¶ 53, 88.

75) “1. Subject to article 19, the guarantor/issuer shall pay against a demand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Following a determination that a demand for payment so conforms, payment shall be made promptly, unless the undertaking stipulates payment on a deferred basis, in which case payment shall be made at the stipulated time.

2. Any payment against a demand tha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does not prejudice the rights of the principal /applicant”(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rticle 17, December 11, 1995).

명되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급이 선의로 행해지지 않을” 경우에만 일치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금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확약의 지급을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⁷⁶⁾

제 20 조 1 항⁷⁷⁾에서는 법원에 확약의 지급을 방해하는 또는 수익자의 수중에 있는 지급의 수익을 동결하는 暫定的 命令(provisional court measures)을 행하도록 수권하지만 단지 그 청구가 부당하거나 또는 확약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권한다. 그러한 잠정적 명령을 획득하기 위하여 개설의뢰인은 즉시 이용가능한 유력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수익자에 의하여 행해진 또는 행해질 것으로 기대된 청구가 부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본조는 獨立的 確約의 지급 메카니즘을 방해하는 잠정적 유지명령은 경솔하게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코먼로의 정책 관심사는 일단 확약이 지급되면 종결되며, 수익자의 어떤 다른 금전과 비교하여 수익자의 수중에 있는 지급의 수익을 동결 또는 차압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아무런 특별한 정책 이유도 없다.⁷⁸⁾

4. 準據法

본 협약의 주용한 내용으로서 準據法에 관한 규정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본 협약 제 21 조⁷⁹⁾ 및 제 22 조⁸⁰⁾에서는 다음과 같이 準據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21 조 (준거법의 선택)

76) M. Sneddon, *op. cit.*, p. 148.

77)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rticle 20 1, December 11, 1995 참조.

78) M. Sneddon, *op. cit.*, p. 148.

79) The undertaking is governed by the law the choice of which is :
(a) Stipulated in the undertaking or demonstrat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undertaking ; or
(b) Agreed elsewhere by the guarantor/issuer and the beneficiary”(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rticle 21, December 11, 1995).

80) “Failing a choice of law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the undertaking is governed by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guarantor/issuer has that place of business at which the undertaking was issued”(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rticle 22, December, 1995).

확약은 준거법의 선택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거나 합의된 준거법에 의하여 지배된다:

- (a) 확약에서 규정되거나 또는 확약의 제조조건에 의하여 증명된 법률 또는
- (b) 보증인/발행인 및 수익자에 의하여 다른 곳에서 합의된 법률.

제 22 조 (준거법의 결정)

제 21 조에 따라서 준거법의 선택이 없는 경우, 확약은 보증인/발행인이 확약을 발행한 영업장소가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지배된다.

현행의 準據法과 관련한 협약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하다. 만일 당사자들이 보증서 또는 별도의 합의서 내에 準據法을 명시하였거나 또는 準據法의 선택이 “보증서의 제조조건에 의하여 증명된다면” 그 선택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중립적인 또는 특히 정제된 것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거래와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는 법률을 당사자들이 선택하도록 허용할 실제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될 수 있는 準據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도 놓여지지 않는다.⁸¹⁾

만일 당사자들이 아무런 準據法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準據法은 비록 지급지가 다른 곳일지라도 보증서 발행인의 영업지의 準據法이 될 것이다. 보증서가 발행인의 지점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 그 지점의 위치가 準據法을 결정하는 장소일 것이다. 대부분의 재판권에서 지배적이고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단순한 규칙은 특히 발행인과 수익자 간의 관계에 적당하다. 그러나 작업부는 通知銀行의 의무는 또한 發行人의 영업지의 법률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⁸²⁾

두 개의 獨立的인 保證書가 존재하기 때문에 逆保證書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 제안된 國際私法 규칙 하에서 양 보증서는 그 보증서의 발행인의 법률에 의하여 지배될 것이다. 그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들에 있어서 間接保證書와 逆保證書는 두 개의 상이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지배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는 오늘날 인정받고 있는 동일한 결과이다.⁸³⁾

81) U.N. Doc. A/CN.9/345, ¶191.

82) *ibid.*, ¶199.

83) Eric E. Bergsten, *op. cit.*, p. 879.

IV. 協約의 問題點

1. 信用狀統一規則의 相衝問題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동등한 법률적 증서로 간주하는 결정은 스탠드바이 信用狀이 URDG보다 오히려 UCP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지배되어야 한다는 ICC의 결정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두 증서를 따로 따로 대우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ICC 설명은 다음과 같다.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이미 UCP에 의하여 지배된다.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요구불 보증서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금융상 및 상업적 활동에서 이용되는 전목적의 금융상 지지증서로 발전하여 왔으며 드물게 요구불 보증서에 관하여 직면되는 관행 및 절차(예를 들면 확인, 은행 자신의 비용부담으로서의 개설, 개설인 이외의 당사자에게 서류의 제시)를 정기적으로 포함하며 그것은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貨換信用狀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따라서 스탠드바이 信用狀은 기술적으로는 요구불 보증서의 정의 내에 있지만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개설인은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개개의 요건에 보다 상세하고 보다 적절한 UCP를 계속하여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된다.⁸⁴⁾

따라서 본 협약에서는 獨立的 保證書와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동등한 법률적 증서로 간주하고 있지만 信用狀統一規則은 獨立的 保證書와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별개로 취급하며 스탠드바이 信用狀을 계속하여 UCP가 지배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準據法에 관하여 본 협약이 국제상업회의소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協約 自體의 限界性

본 협약은 제7장 제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信用狀統一規則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은 제20조의 受益者의 사기적 행위에 대한 開設依頼人の 救濟에

84)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ntroduction, ICC Publication No. 458, at 4.

관한 조항과 제 21 조의 國際私法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은 스탠드바이 信用狀 關係當事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운용과 관련한 각 당사자들의 權利義務關係에 관하여 信用狀統一規則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 4 장(제 13 조~제 19 조)에서 간단한 일반적인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내용은 國際的인 標準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명확한 指針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즉, 동 협약은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定義, 暫定的 法院措置 및 國際私法 등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운용과 관련한 당사자들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운용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점이 본 협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동 협약은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관한 準據法으로서 信用狀統一規則과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될 것이 기대된다. 즉, 信用狀統一規則에서 미비한 사항인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定義, 受益者의 詐欺行爲에 대한 開設依頼人의 救濟, 國際私法의 問題에 관해서는 동 협약이 準據法이 될 것이며, 한편으로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운용을 둘러싼 당사자들간의 權利義務關係는 계속하여 信用狀統一規則이 準據法으로 이용될 것이다. 이는 賣買契約에 관한 準據法으로서 계약의 성립, 계약위반의 구제에 관해서는 이른바 비엔나 協約, 당사자들간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해서는 인코텀스가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V. 要約 및 結論

본고에서는 1995년 12월 11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제정·공포한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에 관한 유엔 協約에 관하여 동 협약의 제정배경, 협약의 주요내용 및 협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절에서는 본론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동 협약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의 활성화를 건의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동 협약이 제정된 배경으로는 국제거래에서 獨立的 保證書 및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이용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를 규율하는 準據法이 미비하거나 결여되어 있어서 국제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는 인식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서 양 증서에 대한 해석의 표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협약이 제정되었으며, 본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國際性, 獨立性, 不當한 請求, 準據法에 관한 내용을 들 수 있다. 한편 본 협약의 문제점으로는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규율을 둘러싼 國際商業會議所와의 相衝問題와 동 협약이 당사자 간의 權利義務關係에 관하여 내용이 미약하다는 協約 自體의 限界性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실무상 獨立的 保證書와 스탠드바이 信用狀 양자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獨立的 保證書와 스탠드바이 信用狀과 관련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여 왔고 우리 나라에서도 과거 외환은행과 이란의 Terarat 은행과의 사이에 獨立的 保證書를 둘러싼 분쟁(서울 민사지법 제12부 1985. 9. 26. 선고 83가합 7141 보증금청구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獨立的 保證書와 스탠드바이 信用狀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법적 문제의 논의는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아직 발효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동 협약이 발효하게 된다면 동 협약은 우리 나라에서의 獨立的 保證書와 스탠드바이 信用狀의 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앞으로 본 협약의 제정을 계기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를 촉구한다.

參 考 文 獻

- 姜甲善 譯, 貿易決濟論, 法文社, 1977.
- 金善國, “UNCITRAL의 獨立的 保證과 保證信用狀에 관한 統一法制定論議(I)”, 仲裁 제 235 호, 大韓商事仲裁院, 1991. 8.
- 朴錫在, “스탠드바이(Standby)信用狀의 活用上的 問題點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 請求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6.
- 小峯 登, 信用狀統一規則,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77.
- 林泓根 譯, “對外商去來에 있어서 保證信用狀과 이와 類似的한 擔保形態”, 樁江 孫珠 瓚博士華甲紀念論文集, 商事法の 現代的課題, 博英社, 1984.

- Andrews, G. and Millett, R., *Law of Guarantees*, Longman, 1992.
- Bergsten, E.E., "A New Regime for International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The UNCITRAL Draft Convention on Guaranty Letters", *The International Lawyer*, Vol. 27, 1993.
- Bertrams, R.I.V.F.,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2nd revise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 Byrne, J.E. and Burman, H., "Introductory Note", *International Law Materials* Vol. 35, 1996.
- Dolan, J.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2nd ed., Warren, Gorham & Lamont, 1991.
- Goode, R.,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shing S.A., 1992.
- Houtte, H.V.,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1995.
- ICC, *Decisions(1975-1979)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1980.
-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ICC Publishing S.A., 1991.
- Jones, G. W., "UNCITRAL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Guaranty Letters", *International Business Lawyer*, Vol. 22, 1994.
- Kozolchyk, B., "The Emerging Law of Standby Letter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Arizona Law Review*, Vol. 24, 1982.
- Loke, A., "Standby Credits and Performance Bonds: The Lesson of the Iranian Experience", *Current Problems of International Trade Financing*, 2nd ed.(edited by E.P. Ellinger), Butterworths, 1990.
- Lord, R.A., "The No-Guaranty Rule and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Controversy", *Banking Law Journal*, Vol. 96, 1979.
- Pawlowic, D., "Standby Letters of Credit: Review and Updat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3, 1991.
- Pearlman, S.J., "Types of Non-Trade Letters of Credit Used in Today's Marketplace", *A Practical Guide to Letters of Credit*(edited by Charles E. Aster and others), Executive Enterprises Publications Co. Inc., New York, 1990.
- Rowe, M., *Guarantees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Other Securities*, Euro-money Publications, 1987.
- Schmitthoff, C.M., *Schmitthoff's Export Trade*, 9th ed., Stevens & Sons, 1990.

- Sneddon, M., "The UNCITRAL Draft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ustralian Business Law Review*, Vol. 23, 1995.
- Wunnicke, B., Wunnicke, D. B. and Turner, P.S., *STANDBY AND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2nd ed., Wiley Law Publications, 1996.
- Wolfgang Freiherr von Marschall, "Recent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Standby Letters of Credit, Bank Guarantees and Performance Bonds", *Current Problems of International Trade Financing*, 2nd ed.(edited by E.P. Ellinger), Butterworths, 1990.